

- 한편,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,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·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
-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.

향후 조치계획

-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.
- 그리고,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, 시사·교양 분야 프로그램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,
- 아울러,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권 전반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고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.
-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,
- “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,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,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.”라고 하면서,
- “이는 개선되어야 하고,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“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면서,
- “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송업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민광제 서기관(☎044-202-7574),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공상 감독관(☎02-2250-5881), 서울서부지청 박문혁 감독관(☎02-2077-6152), 서울남부지청 이준희 감독관(☎02-2639-228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